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 및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48조제1항·제3항)

- 1)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입찰정보 제출을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함.

- 2)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제출이 가능하게 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8조)

-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 1)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

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5. ~ 10. 4.) 예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를 “이 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기한 경우에는”을 “제기하거나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③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80조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u> 을 통해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u>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u> 공정거래위	③ ----- ----- ----- ----- ----- ----- ----- <u>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u> -----.

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이 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68조(소제기의 통지) ①

제기하거나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신 설>

<신 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신 설>

③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u>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303